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서삼석 · 김 윤
이성윤 · 서미화 · 박용갑
문금주 · 박 정 · 김승원
문대림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·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,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 법상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,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

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2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67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·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·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
2. 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
3.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, 포획·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”를 “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포획·채취의 정지”로 한다.

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에

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
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
2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
제67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
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
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
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
고된 어획실적·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그 배분량
을 어업자별·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
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
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총허용어획량의 할당) ① (생 락) <u>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 · 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 · 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.</u>	제37조(총허용어획량의 할당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 · 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 · 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.</u> 1. <u>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</u> 2. <u>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</u> 3. <u>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</u> 4. <u>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 ③ (현행과 같음)
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① ~ ③ (생 락)	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
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·
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
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
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, 포
획·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
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6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2. 삭제
3.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
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

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
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·
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
업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
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
하여야 한다.

1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
특별법」 제9조제1항부터 제
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
실적과 전제실적

2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
특별법」 제13조에 따른 양
륙실적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
분량의 공제 및 포획·채취의
정지 -----

-----.

제67조(벌칙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u>으로 보고한 자</u>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